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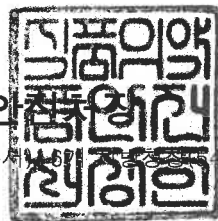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(민원인안내서)」 개정 알림

1. 우리 처(의약품안전평가과)는 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양식(E2B(R3)) 시행 ('21.6.1.)을 앞두고, 새로운 양식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붙임과 같이 「약물 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(민원인안내서)」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. 아울러, 동 민원인 안내서는 우리 처 누리집(<http://www.mfds.go.kr>) '법령자료 → 법령정보 → 공무원지침서·민원인안내서'에서 찾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. 「약물이상반응 및 이상사례 전자보고 가이드라인(민원인 안내서)」 개정안. 끝.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자 본부(53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1개 전부서), 식품안전관리원(1개 전부서), 유관기관

주무관 **하윤정** 사무관 **신경승** 의약품안전평가과장 **김정연** 전결 2020. 11. 30.

협조자

시행 의약품안전평가과-7146 (2020. 11. 30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2706 팩스번호 043-719-2700 / sweetycat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힘내라 대한민국!